

무배당 정기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정기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4년 3월 21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정기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① 정기보험

※ 등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10년 만기	일시납, 5년납, 전기납	만 15세 ~ 60세
20년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만 15세 ~ 60세
55세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5세 ~ 45세
	15년납	만 15세 ~ 40세
	20년납	만 15세 ~ 35세
6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5세 ~ 50세
	15년납	만 15세 ~ 45세
	20년납	만 15세 ~ 40세
65세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5세 ~ 55세
	15년납	만 15세 ~ 50세
	20년납	만 15세 ~ 45세
7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5세 ~ 60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20년납	만 15세 ~ 50세
80세 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만 15세 ~ 60세

나.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 자동이체시의 할인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한다)로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전환특전

(1)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나이가 전환일 현재 5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 할 수 없다.

(3) 보험기간 만료 전 5년 이내에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할 수 없다.

(4) 피보험자의 장애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계약을 전환할 수 없다.

(5)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6)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사업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